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1 발의연월일: 2020. 9. 28.

발 의 자:김병욱·김민기·민병덕

이원욱 • 고용진 • 김정호

민형배 · 최인호 · 유관석

이상헌 · 김민철 · 정정순

강병원 · 김수흥 · 김승원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일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금융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가져오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불합리한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하여 판매금융회사 및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을 위하여 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

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 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 변경 및 운용규제 일원화(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2)
 - (1) 현행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여부를 기준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분류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기관투자자만이 투자 가능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개인투자자도 투자 가능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재분류하여,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각각 적용함.
 - (2)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의 운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분보유 의무, 대출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규제를 일원화함.

-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직접 또는 대부업자 등과의 연계거래를 통하여 개인에게 대출하는 것을 금지함.
- 나. 부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 도입(안 제20조의2 신설)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 후 유예기간 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력요 건을 6개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동 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다. 불합리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시 •견제책임 부여(안 제77조의3제4항, 제249조의4 및 제249조의8제2항 제4호)
 -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경우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하도록 함.
 - (2)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공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하도록 함.

-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업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함.
-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안 제249조의8 제1항, 제2항 및 제5항)
 -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등에 집합투자업자가 이 사실을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 때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신규판매를 중단하도록 함.
 - (2)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함.
 - (3)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함.

- (4)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공모펀드와 같이 집합투자 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자자가 참여하여 집합투자자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함.
-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안 제249조의14)
 -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및 개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감독·검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
- 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 확대(안 제9조제19항 및 제249조의11 제1항)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대통령령에서 49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현재 법률에서 49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함.

- 사.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안 제249조의7제6항 신설)
 - (1)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의무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 시 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 (2) 현재는 모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등의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의한 지배력 확장 가능성이 있게 됨. 따라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아.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른 다른 규제의 정비(안 제249 조의13,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19, 제249조의22 및 제249조의23)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자목적회사, 지 주회사 규제 적용 유예 등의 특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 및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뿐 아니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에도 적용함.
 - (2)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을 대통령 령에 위임함.

자.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칙)

- (1)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각각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봄.
- (2) 이 법 시행 전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출자 약정을 받 을 수 없도록 함.
- (3) 「국가재정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규정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각각 변경함.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조제6항제3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10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을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제28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9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자"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11조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 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2.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 3.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요건 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4.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 원회로부터 그 보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경우

-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문투자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제9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사유"를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제183조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2조제2항제6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편제7장제1절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49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49조의3제3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

은 조 제8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49조의4의 제목 및 제1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위험고지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핵심상품설명서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부를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 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제2항에서 포함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한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한 자는 제5항의 요구를 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집합투자업자가 제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49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7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4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부동산에 운용할 때"를 "운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처분"을 "처분(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호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 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249조의7제3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2주일"을 "제3영업일"로 한다.

제249조의7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 6항"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로 한다.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 1.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 ⑥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다.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8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2 조, 제93조"를 "제93조"로, "제238조제6항"을 "제238조제7항"으로,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1. 제76조제2항.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제230조제5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한다). 다만, 제247조제3항 중 "제3영업일"은 "제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 그 기간 그로 한다.

제249조의8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249조의8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49조의9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5편제7장제2절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한다.

제24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5호·제6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1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49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1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를 "개인(제168 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로 한다.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제24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 의7(제6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49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 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제249조의13제1항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로, "49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제249조의12제4항·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로 한다.

제249조의1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249조의14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집행할 수 있다"를 "집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4제6항제1호 및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보호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성 등을"을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원의 이익을"을 "금융시장 안정및 건전한 거래질서를"로 한다.

제249조의14제8항 및 제9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 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249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까지"를 "제5항까지 및 제8항"으로, "절차, 그 밖에"를 "절차, 등록사항 변경의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 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7제1항 및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49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249조의17제4항 및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8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18제2항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을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9조의19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의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9조의19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업무집행사원"을 각각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249조의20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지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1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2의 제목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49조의2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3의 제목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으로 한다.

제249조의23제3항 전단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회사등"을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44조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하고, 같은 조 제19호의3 중 "제249조의7제2항"을 "제249조의7제2항 (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의4를 제19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제445조제25호의2 및 제25호의3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 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4부터 제25호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4.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5의5. 제24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작성·제공하지 아니한 자

25의6.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제446조제41호의2 및 제41호의3을 각각 제41호의3 및 제4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1호의4 (종전의 제41호의3)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446조제45호 중 "제249조의12제3항·제4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49조의22제2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6호의2 중 "제249조의12제6항·제9항 또는 제249조의23제5항"을 "제249조의23제5항"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41호의3 중 "제249조의7제3항"을 "제249조의7제3항(제 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

- 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별표1 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에 제8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6의4. 제7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1 제259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 제259호의2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259호의3 중 "전문사모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에 제259호의5부터 제259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259의5.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기 전에 설명서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경우

259의6. 제24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작성・제공하지 아니

한 경우

- 259의7.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 259의8.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등에 관하여 제249조의4제5 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 별표1 제260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별표1 제260호의8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별표1에 제260호의10부터 제260호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260의10.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경우
 - 260의11.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운용한 경우
 - 260의12.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 260의13.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 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 260의14.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경우
- 별표2 제77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

자기구"로 한다.

별표2 제78호의3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2에 제78호의11부터 제78호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8의1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78의12.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 구를 운용한 경우
- 78의13.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 78의14.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운용한 경우
- 78의15.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6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6 제1호 중 "제252조제1항"을 "제249조의14제12항"으로 한다.

별표6 제2호 중 "제2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을 "제249 조의14제13항"으로 한다.

별표6 제3호 중 "제252조제2항"은 "제249조의14제13항"으로 한다.

별표6 중 제9호,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 투자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을 한 경우
- 9의2. 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9의3. 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 9의4. 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 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6 제15호의2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별표6 제15호의5부터 제15호의7까지를 각각 제15호의6부터 제15호의8 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의5. 제249조의15제8항에 따른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별표6 제21호의2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별표6 제21호의3을 삭제한다.
- 별표6 제21호의5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사 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2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제249조의6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중이 법 시행일 당시 제249조의7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

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중 제249조의11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3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제249조의22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22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제249조의23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글 참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들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는 추가로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자로부터의 출자 약정은 제외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들이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249조7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해당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5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 제5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은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 제6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시 설명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 정 시행 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8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회계연도 의 말일 또는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이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4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249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단서 및 같은 목 (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 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⑥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를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 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 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부터 3)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⑧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각각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4호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중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 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 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

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⑨ (생	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⑨ (현
략)	행과 같음)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u>전문</u>	<u>일</u> 반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사모집합투자기구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	
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u>자기구등</u>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	
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	
를 말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u>구등</u> 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	4일반 사모집합투자기
<u>합투자기구등</u> 의 효율적인 업	<u> 구등</u>
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무	

제7조	(금융투	자업의	적용배제)	1
~	⑤ (생	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 2. (생략)
- 3. 제9조제29항에 따른 <u>전문사</u> 모집합투자업자</u>가 자신이 운 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u>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하는 경우

4. (생략)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⑱ (생 략)
 - ①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 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 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6
1. · 2. (현행과 같음)
3 일반 사
<u>모집합투자업자</u>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4. (현행과 같음)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⑱ (현행과 같음)
(9
<u>100명</u>

-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2.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 구(이하 "<u>전문투자형 사모집</u> <u>합투자기구</u>"라 한다)
- ② ~ ② (생 략)
- ②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 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 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 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전 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 저 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 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 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1. <u>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u>
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
<u>기구</u>
② ~ ② (현행과 같음)
⊗일반 사모집합
<u>투자업일반</u>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
<u> 자업자일</u>
반 사모집합투자업
<u>.</u>
∥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일
반 사모집합투자업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2.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 3.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 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 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4.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상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보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 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2)	<u>일반</u>
사모집합투자기구등	
	<u>일</u>
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 금융투자사업자와 <u>전문투자형</u> <u>사모집합투자기구등</u>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 4. (생략)
- ③ (생 략)
-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 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 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1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등
2 <u>일반</u>
<u> 사모집합투자기구등</u>
3
olar vi 🗆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등
<u> 집합투자기구등</u> 일반
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기구등 <u>일반</u> <u>일반</u>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기구등 <u>일반</u> <u>일반</u> 사모집합투자기구등 4. (현행과 같음)
집합투자기구등일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기구등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집합투자기구등일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기구등일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u>기구등</u>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 다. < 후단 신설 >

⑤ ~ ⑧ (생 략)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 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① (생략)

제89조(수시공시)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

<u>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u>
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
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9
<u>일반 사모</u>
집합투자기구
①·① (현행과 같음)
제89조(수시공시) ①
1. (현행과 같음)
2

정 및 그 사유

3. ~ 5. (생략)

② (생략)

-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① 집 전 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 의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 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 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u>경우</u>

2. (생략)

<신 설>

<u>入</u>	유(제23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	투자기	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
을 거부하는	결정 '	및 그	사유
를 포함한다			

- 3.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세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① -
1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 향이 중대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 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 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 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 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 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 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생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 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

1. ~ 5. (생 략)

6. 제249조의9 제1항에 따라 투

자신탁인 <u>전문투자형 사모집</u> 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 은 경우

③ ~ ⑤ (생 략)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u> 기구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u>전문사</u> <u>모집합투자업</u>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는 <u>전문사모집합투자업</u> 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 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 할 수 있다.

1. · 2. (생략)

<u>일반 사모집합투자</u>
<u>기구</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
한 특례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일반 사
모집합투자업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
<u>구</u> 의 투자자) <u>일반 사모집합투</u>
<u> 자기구</u>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자일반 사
모집합투자기구
 1.·2. (현행과 같음)

- 제249조의3(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저의 등록) ① 전문사모집합투자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 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 2. (생략)
 - 3.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전문사모집합 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 적 설비를 갖출 것
 - 4. ~ 6. (생략)
 - 7.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③ 제1항에 따른 <u>전문사모집합</u> <u>투자업</u>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 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세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의 등록)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
<u>업</u>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
1. · 2. (현행과 같음)
3
일반 사모집
합투자업
4. ~ 6. (현행과 같음)
7.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③일반 사모집합
<u>투자업</u>
·.
4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u>전문</u>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 면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 다.
- 1. 제2항의 <u>전문사모집합투자업</u>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 우

2. · 3.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⑤ (현행과 같음)
⑥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1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 · 3. (현행과 같음)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일반 사모집합투자
업자

⑧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 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
⑨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
<u>구</u> 의 투자권유 등) ① <u>일반 사</u>
모집합투자기구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이
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 게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 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 설>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위험고지의 적 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핵심상품설명 서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부를 위하 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 투자업자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일반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 서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신 설>

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 (제2항에서 포함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제 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한 자는 그 일반 사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2항에 따른 핵심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 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한 자는 제5항의 요구를 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가 제3영업일 이 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와 이행을 위한 기 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 행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요구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 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 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 다.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 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2. (생략)

제249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의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투자회사등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전문투자형성자 보임합투자기구를설정·설립하여야한다.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제249소의5(일반 사모집압투자기
<u>구</u> 의 투자광고) <u>일반 사모집합</u>
<u>투자기구</u>
<u>.</u>
1. · 2.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
<u>구</u> 의 설정·설립 및 보고)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u>일반 사모</u>
집합투자기구
1
가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u>
<u> </u>
나일반 사모집합투자기
<u> </u>

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자

다. 그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u> <u>투자기구</u>의 집합투자증권 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라. (생략)

-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u>구</u>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생략)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 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 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 정・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

다일반 사모집합투자기
<u> 구</u>
라. (현행과 같음)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3. <u>巨也 </u>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
4. (현행과 같음)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4. (현행과 같음)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4. (현행과 같음)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4. (현행과 같음)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4. (현행과 같음)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4. (현행과 같음)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u>전</u>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 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 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 자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 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 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 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생략)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방법 등) ① 전문사모집합투자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같다)------ 일반 사모집합투

<u>-</u>
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u>일반</u>
사모집합투자기구
⑤ (현행과 같음)
ll 249조의7(<u>일반 사모집합투자기</u>
<u>구</u> 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u>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u>
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 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합 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 이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 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 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 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 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그 차입금의 총액

<u> 자기구</u>
일반 사모집합투
<u> 자기구</u>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1. (현행과 같음)
2 <u>일반</u>
사모집합투자기구

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신 설>

-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
<u>운용할 때</u>
<u>.</u>
1
처분(투자
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
<u>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
2
이바 시민지하트기
<u>일반 사모집합투자</u> 기구
<u>/ </u>

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 ______
-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개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이용하는 행위
-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개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으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가. 국가</u>

<신 설>

-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 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 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 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 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

나. 한국은행 다.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 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 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u>일</u>반 사모 집합투자기구-----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u>자기구</u>-----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u>2주일</u>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영업일-----

-----.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유한회사, 그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투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의 규 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 ⑤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 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 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 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 합투자기구
- 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 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u>⑧ -----</u><u>제6항</u>---------일반 사모집합투

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 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 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 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 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 조제2항 · 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 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 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 항 ·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 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

<u> 자기구</u>
<u>.</u>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
<u>구에 대한 특례)</u> ①
<u> </u>
레93조

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 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 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 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 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 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 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 35조, 제237조, 제238조제6항부 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1항제3 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 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 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 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 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 같은 항 제6호 · 제7호, 같은 조 제6항 · 제7항, 제248조 및 제 253조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u>제238조제7항</u>
일반 사모집합투
<u>자기구</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
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
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
을 적용한다. 다만, 제5호의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
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1. 제76조제2항. 다만, 제92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제230조제5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 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한다). 다만, 제247조제3항 중

-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④

 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

 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 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 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 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제3영업일"은 "제3영업일 또
는 집합투자업자가 제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
우 그 기간"으로 한다.
·
<u>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u>
어제 가요기원드리시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 련된 사항은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단서 신설>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 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 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 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 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 고한 것으로 본다.

,
<u>⑤</u>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
<u>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u>
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
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
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237
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집합투
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
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u>한다.</u>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인 투자회사는 전문사모집합 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 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 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 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⑧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경우에는 제7 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 이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이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이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시네 시민리원
<u>일</u> 반 사모집합
<u> 투자업자</u>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9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일반 사모집
<u></u> 합투자기구
<u>.</u>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증권을 판매하는 <u>전문사모집합</u> 투자업자는"으로 본다.

- 제249조의9(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투 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제249조의6제1항 각 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 5. (생략)
 -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u>전</u>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 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u>일</u> 반 사모집합
<u>투자업자</u>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
<u>구</u> 에 대한 조치) ①
<u>일반</u>
사모집합투자기구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 ~ 5. (현행과 같음)
6
<u>일</u>
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를 할 수 있다.

- 1. ~ 7. (생략)
- ③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 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 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 <u>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u> <u>기구</u>
-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u>경</u> <u>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1. ~ 7. (현행과 같음)
③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u> </u>
1. · 2. (현행과 같음)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u> </u>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 등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서명	하여야	하다.
	, ,	. , , ,	<u> </u>

- 1. ~ 4. (생 략)
-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 6. ~ 9. (생략)
- ②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u>구</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 기하여야 한다.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제6
 호의 사항
- 2. (생략)
- ③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u>구</u>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 2.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u>구</u>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 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 ④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u>구</u>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9. (현행과 같음)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u>제6호</u>
9 (천체과 가용)
2. (현행과 같음) ② 기괴기의 기미기하트기기기
③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1.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한다.

⑤ (생략)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 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 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생 략)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u>경</u>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의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u>49명</u>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 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u>기관전</u>
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⑤ (현행과 같음)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⑦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u>기</u>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100명</u>
·.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유한책임사원은 <u>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 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 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 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 할 수 있다.
- ⑥ 유한책임사원은 <u>다음 각 호</u>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기관선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관전용 사</u>
모집합투자기구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⑥ <u>개인(제168</u>
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
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
로서 다음 각 호에

-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
 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
 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
 한다)
-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 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

 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

 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⑦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u> 구
8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u>기관전용 사모집</u> 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하다.

⑨ (생략)

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 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 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 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 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 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 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⑨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 방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 하여는 제249조의7(제6항을 제 외한다)을 준용한다.

- 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
 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투자대상기업[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 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 에 대한 투자

-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경영참여형 사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 사에의 예치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건전한 자산운 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방법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 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금액을 제1 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제 1호 · 제2호 또는 제5호의 방법 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 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취득 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 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 분증권등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 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 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 를 포함한다)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 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

의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 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 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 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 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 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 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융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 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등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 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 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경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경우
-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 의 산정방식, 그 밖에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 자재산 운용 현황, 제7항에 따 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 (제249조의13제3항에 따른 투 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 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사 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 한다.
 - 1. (생략)
 -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 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 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 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 한 투자목적회사

나. ~ 다. (생 략)

-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 4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 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 명 이내일 것
- 5. (생략)
- ② (생략)
-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 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 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 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 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생략)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
<u> 자기구</u>
나. ~ 다. (현행과 같음)
4 <u>사모집</u>
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사모집합투자기
<u>구가 아닌 주주</u>
<u>100</u>
<u>명</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u>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제249조의12제4항·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신 설>

⑥ (생략)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저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업 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이

	5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	- —
	⑥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	투
	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
	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	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	여
	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
	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	한
	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	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
	<u>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4	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 —
	②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은 그 법 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 ③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u>구</u>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 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 관에 따라 <u>경영참여형 사모집</u> 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 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

<u>집행할 수 있으</u>
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
<u>야 한다</u> .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
<u>투자기구</u>
⑥

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생략)
- 3.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자산의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제공하는 행위

1.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2. (현행과 같음)
3
기관전용 사모집
합투자기구
<u>日 1 / 1 / 1 1 </u>
4 <u>금융시장 안정 및</u>
건전한 거래질서를
⑦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 </u>

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있다.

-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u>거래질서를</u>
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9
<u>기관전용</u>
사모집합투자기구 <u>기</u>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①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한 부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 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①
<u>기관전용</u>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집행사원에 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 🔻 록 등) ① <u>경영참여</u>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하는 수 이상 갖출 것
- 4. ~ 5. (생략)
- ② ~ ⑤ (생 략)
-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
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
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세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
록 등) ①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u>
<u> 자기구</u>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 1. ~ 2. (현행과 같음)
-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 용전문인력-----

- 4. ~ 5.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모집합투자기구-----

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금융위원회는 <u>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 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 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 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 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 래제한 등) ① 업무집행사원은 □ 래제한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 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 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 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 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 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 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① ----제5항까지 및 제8항-

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

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영참연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3. (생략)
-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개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 ③ 업무집행사원은 <u>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1. (현행과 같음)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현행과 같음)
②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③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운용할 때 <u>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업무집행사원이 발행한 증 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④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 산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발행 한 증권(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 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경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 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생략)
- 2.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u>기구</u>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 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계열

<u>7</u>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4 <u>7</u>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u>7]</u>
관전용 사모집합투지	<u> 위기구</u>
1. (현행과 같음)	
2 <u>기관전용 시</u>	<u> 모집합투자</u>
<u>기구</u>	

회사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① 경 저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u>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출자 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 임사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결과 <u>경</u>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u>49명을</u>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1제3항을 준용 한다.
- ④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구는 다른 회사(다른 경영참여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① <u>기</u>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7</u>]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100명</u>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기관전용</u>

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

⑤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u>구</u>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 을 제249조의11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 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 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 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 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 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 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 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자(이하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u> </u>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u>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계열 <u>기관전용</u> 사모집합투
<u>자기구</u> 등에 대한 제한)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u>기구</u>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u> 구
<u>'</u>
2
<u>기관전용 사</u>
모집합투자기구등

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 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 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대 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 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 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 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 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 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 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 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 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u>기관전용 사모집합</u>
<u>기관전용 사모집합</u> <u>투자기구</u>
<u>투자기구</u>
<u>투자기구</u>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u>
<u>투자기구</u>
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
투자기구
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
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
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 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구
- 2. · 3. (생략)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u>투자대상기</u>업

5. (생략)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 3. (현행과 같음)
4
<u>투자대상기</u>
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
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
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5. (현행과 같음)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u>자기구</u>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
4

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u>구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u> <u>투자기구등</u>이 아닌 계열회사 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 유하는 행위
- 2.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u>구등</u>이 아닌 계열회사가 제2 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 는 행위
-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u>
<u>자기구등</u>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 </u>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
례) ①
사모집합투
자기구
<u>제249</u> 조의7제5항제1
호 또는 제2호
②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사
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
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무한책임사원 중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 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 해서는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 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 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 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 용한다.

④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

자를 포함한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 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7제5항제1 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 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 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

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 사원의 대주주"로 본다.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u> <u>투자기구</u>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제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 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 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u>투자업자</u>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
<u>업자업무집행</u>
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
⑤
<u>사모집합투자기구</u>
제249조의20(<u>기관전용 사모집합</u>
<u>투자기구</u> 에 대한 특례) ①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 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 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 까지, 제250조, 제251조 및 제2 53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u>경영참여형</u>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아니한다.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249조의 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

<u>제249</u> 조의2부터 제249조의6
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u> 자기구</u>
②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③
<u>기관</u>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기관전용 사
<u>모집합투자기구기관</u>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 1조의4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21(<u>경영참여형</u> 사모집 제 <u>합투자기구</u>에 대한 조치) ① 금

,
4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
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
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249조의21(<u>기관전용 사모집합</u>
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경영참</u>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을 명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u>
 <u>구</u>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 6. (생략)
-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u>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7. (생략)

<u>기관전</u>
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 2. (현행과 같음)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 6. (현행과 같음)
7
<u>7</u>]
<u>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② <u>기관전용 사</u>
<u>모집합투자기구</u>
<u>.</u>
1. ~ 7. (현행과 같음)

- ③ 금융위원회는 <u>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 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 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 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

③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1. ~ 3. (현행과 같음)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u>7</u>
_
제249조의22(<u>기업재무안정 사모</u>
<u>집합투자기구</u> 등에 대한 특례)
① <u>기업</u>
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1. ~ 6. (생략)
- ②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 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 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 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
1. ~ 6. (현행과 같음)
②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
<u>기구는</u>
1 ~ 5. (현행과 같음)
③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
<u>기구</u>

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83조에 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 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 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 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 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 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 하지 못하며, 제249조의13제3항 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 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u><후</u>
<u>단 삭제></u>

<삭 제>

투자기구가 차입한 금액 및 채 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 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 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u>기업재무</u> 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 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 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 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 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

⑤
기업재무
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
기구
·

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 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①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u>기업재무안정 경영참</u>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 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3(<u>창업</u> · 벤처전문 경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u>창업</u> ·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 ·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투자 · 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

⑦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
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
합투자기구
<u> </u>
제249조의23(<u>창업·벤처전문 사</u>
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
례) ①
창업 •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
기구

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경우는 제외한다.

- 1. ~ 6. (생략)
- ②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 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 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 3. (생략)
-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③ 창업・벤처전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자기구-----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

<u>사모집합투자기구</u> - <u><단서</u> <u>삭제></u>
1. ~ 6. (현행과 같음)
② <u>창업·벤처전문</u> 사모집합투
<u> 자기구는</u>
1 0 (청체기 가ბ)
1. ~ 3. (현행과 같음)
③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

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 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 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제 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 의12제4항 및 제6항(제249조의 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 ① <u>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u>창업·벤처전문 경영</u>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 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 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u>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u>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 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u> 후단 삭제>
④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
자기구
<u>창업·벤처전문</u> 사모
<u>창업·벤처전문</u> 사모
<u>창업·벤처전문</u> 사모
<u>창업·벤처전문 사모</u> 집합투자기구
<u>창업·벤처전문</u> 사모
<u>창업·벤처전문 사모</u> 집합투자기구

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u>투자회</u> 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 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 다)을 영위한 자
 - 2. ~ 19의2. (생략)
 - 19의3. <u>제249조의7제2항</u>을 위반 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제	· 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①
	<u>투</u> 자회
	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u>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444조(벌칙)
·	
	<u>.</u>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 ~ 19의2. (현행과 같음)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
	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19의4. (생략)

20. ~ 29. (생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5. (생략)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u>전</u> 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u>전문사모집합투</u> 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u>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u>
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u>19의5</u> . (현행 제19호의4와 같
<u>o</u>)
20. ~ 29.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
1. ~ 25. (현행과 같음)
25의2 <u>일</u>
반 사모집합투자업
<u>일반 사모집합</u>
<u>투자업</u>
25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5의4.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
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
<u>한 자</u>
25의5. 제249조의4제3항을 위반
하여 설명서를 작성・제공하
<u>지 아니한 자</u>
<u>2</u> 5의6.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

26. ~ 48. (생략)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1. (생 략) <신 설>

41의2. (생략)

41의3.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명령을 따르지아니한 자

42. ~ 44. (생략)

45. 제249조의12제3항 · 제4항 (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5 항, 제249조의22제2항 · 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6. ~ 48. (현행과 같음)
세446조(벌칙)
1. ~ 41. (현행과 같음)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
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
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u>41의3</u> . (현행 제41호의2와 같
승)
41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42. ~ 44. (현행과 같음)
45. <u>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u>
의22제2항·제6항 또는 제249
<u> 조의23제2항</u>

하여 첰회 • 변경 또는 시정은

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 나 처분한 자

- 46. 제249조의12제6항(제249조 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 미 취득한 다른 회사의 지분 증권 전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 46의2. 제249조의12제6항·제9 항 또는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 63. (생략)

-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1. ~ 41의2. (생 략)
 - 41의3. 제249조의7제3항을 위반 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 49. (생략)

② (생략)

<삭 제>
40 Alon - 10 40 7 Alon - 10 7
46의2. <u>제249조의23제5항</u>
47. ~ 63.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u>.</u>
1. ~ 41의2. (현행과 같음)
41의3. 제249조의7제3항(제249
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자
_ ,
42. ~ 4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1. 삭 제
- 2. ~ 10. (생략)

<신 설>

<신 설>

11. ~ 19. (생략)

④ (생 략)

- 2. ~ 10. (현행과 같음)
-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 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 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 여 제출한 자
- 11. ~ 19.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